

中學校 高等學校 師範學校 施設基準令 “拔萃”

(4292年 4月 1日 公布)

제 3 조 제3항 도서실(施設義務規定)

제 7 조 3학급까지는 300권이상의 도서를 비치해야하고 3학급을 초과하는 3학급마다 200권이상식을 가산하여 비치하여야야한다

同 附 則

제 2 조 본령공포이후에 설립되는 학교는 그 설립 당초에 적어도 제3조 제2호 제4호 제6호와 제12조(但書除外)에 규정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본령의 각 기준에따라 교사 체육장 농장 연습림 어장등 지적시설 전부와 건물시설의 5분의3이상이 건설되고 그 학교의 현성완성년도까지에 본령에의한 시설이 완성될수 있어야한다

제 3 조 본령 공포일현재에 기준하는 학교로서 제12조에 규정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본령 공포일로부터 5년이내에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확충계획에따라 본기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한다

전항의 연도별 확충조치를 그때마다 소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은 학과의 통합 학급의 감축 학생모집의 정지등의 조치를 할수 있다

“圖協月報”配付狀況

1. 會員圖書館 備置用	189部
1. 普通會員, 贊助會員, 名譽會員	199 "
1. 會員圖書館의 館長	160 "
1. 全國의 大學總長, 學長및 圖書館이 있는 機關의長	100 "
1. 國外機關(資料交換包含)	100 "
1. 言論界	100 "
1. 文教部 事務官以上	60 "
1. 全國 主要中高等學校吳 師範學校	600 "
1. 國會 文教委員會	20 "
1. 各道 文社局長吳 學務課長, 文政課長	27 "
1. 全國 教育研究所	13 "
1. 其他	100 "
1. 協會 保管用	若干 "